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취수해역의 수온은 연중 섭씨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다.

나. 염분은 연중 33.8~34.2 피에스유(psu)로서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나트륨(Na), 마그네슘(Mg), 칼슘(Ca) 및 칼륨(K) 원소는 각각 27.8(Na) : 3.3(Mg) : 1.1(Ca) : 1(K)의 일정성분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성분비의 허용오차 범위는 ± 10 퍼센트로 한다.

라. 영양염류의 수질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질산성 질소	인산염	규산염	질소/인 비율
단위	mg/L	mg/L	mg/L	농도비(ppm비)
기준	0.13 이상 0.36 이하	0.02 이상 0.07 이하	0.25 이상 2.4 이하	4.5 이상 6.5 이하

마. 청정성 확보를 위한 일반물질, 미생물, 유해영양물질 및 방사능의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일반물질	미생물	유해영양물질				방사능		
	수소이온 농도	대장 균군	카드뮴 (Cd)	납 (Pb)	구리 (Cu)	수은 (Hg)	세슘 (¹³⁷ Cs)	스트론튬 (⁹⁰ Sr)	삼중수소 (³ H)
단위		MPN/ 250ml	mg/L	mg/L	mg/L	mg/L	mBq/L	mBq/L	Bq/L
기준	8.1 이하	검출 안됨	0.001 이하	0.005 이하	0.1 이하	0.001 이하	4.0 이하	3.0 이하	6.0 이하

2. 해양심층수 수질검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